

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서

접수번호	농업경영체 등록번호	접수일자	처리기간 60일
------	---------------	------	----------

신청인	성명	주민등록번호
		자택전화
	주소	휴대전화
		전자우편 주소

농장현황	농장명	사업자등록번호	
	농장전화	대	성명
	팩스번호		생년월일
	설립일	표	전화번호
	년 월 일		전자우편 주소
구성원수	명		

친환경인증 최초 인증일 (인증번호)	안전관리인증농장 최초 인증일	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수급횟수	회
-------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-----------------	---

축종	인증 종류	농장소재지				사육 두수	인증 두수	예상생산량 (단위)	예상금액 (천원)
		시·군·구	읍·면	리·동	지번				
합계									

입금계좌 (은행명)	(예금주)	(계좌번호)
------------	-------	--------

「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축산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선정을 신청하며, **사업신청과 관련하여 지급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처리하는 것에 동의(동의하는 경우 []에 "√"표시)합니다.**

[] 직접지불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에 동의합니다.

[] 직접지불금 지급과 관련하여 상기 개인정보의 제공에 동의합니다.

※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·활용 동의는 **농업경영체 등록이 말소되는 날까지 유효**하며(등록정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하 같습니다), 국립축산식품부,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등록 말소 후에도 보조금 등 수령 정보 관리 등을 위하여 위의 개인정보를 보유·이용할 수 있습니다.

※ 위의 개인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·활용에 관한 동의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. 다만, 동의하지 않을 경우 **공익직접지불금의 지급,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용자·보조금의 지원 등이 제한**될 수 있습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날인)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귀하

첨부서류	1. 안전관리인증농장 인증서 사본 1부 2. 「국립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3조제3항에 따른 인증서 사본 1부	수수료 없음
------	--	-----------

처 리 절 차

신청서 작성	→	접수	→	검토 및 확인	→	지급대상자 선정 통보
--------	---	----	---	---------	---	-------------

신청인

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